

군포도시공사 제5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 국



2026년 8월 28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81 호

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1항 중 “국장”을 “실·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관 성 우
	직 위 성 명	혁 신 기 획 팀 장 성 용 현
	담당자 성명 (전 화)	신 용 규 (3 9 0 - 7 6 0 4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이사 및 감사)	제6조(이사 및 감사)
① 공사는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, 비상임 이사는 군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도시공사 소관업무 담당 국장 2명을 당연직으로 하고, 그 외 이사는 시에서 승인된 외부전문가로서 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실·국장 ----- ----- ----- -----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
[참고사항]

□ 「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」 일부발췌

제12조(이사)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, 상임이사는 사장으로 한정한다.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실·국장, 도시개발 업무 담당 국장과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,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.